

이 사 회 의 록

1. 회의의 종류 :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2. 회의의 통지일자 : 2025. 12. 08. (월)
3. 회의의 개최일시 : 2025. 12. 18. (목) 18:00 ~ 20:00
4. 회의의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22(연경반점)
5. 출석 현황
 - 가. 참석대상 임원 : 이사 8명, 감사 2명
 - 나. 개의 정족수 : 재적이사의 과반수 4명
 - 다. 출석 이사 : 대표이사 김●식
이사 한 ●, 백●흠, 민●훈, 류●원, 최●민, 김●길, 조 ● (총8명)
 - 라. 출석 감사 : 감사 윤●노(총1명)
6.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2호 의안 :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3호 의안 : 2026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4호 의안 : 2026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5호 의안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6호 의안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7호 의안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8호 의안 : 2025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9호 의안 : 2025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0호 의안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1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7. 회의 내용
 - 가. 성원보고 개회선언
 - 의장 김●식 : 법인정관 제4장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8명중 8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선산복지재단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를 선언하다.
 - 나. 의장 인사
 - 의장 김●식 :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 김●식의 인사와 더불어 심의안건에 관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바라다.



다. 전차 회의록 접수, 승인

- 의장 김●식 : 2025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전차 회의록 승인 안건을 상정하고 의장이 낭독 후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라.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

- 의장 김●식 : 제출된 총11개의 부의안건 외 추가제출 안건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총11개의 부의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선포하다.

《 제 1 호 의안 :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제 2 호 의안 :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제 3 호 의안 : 2026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제 4 호 의안 : 2026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제 5 호 의안 : 2026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의장 김●식 :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 ① 예산편성 요령 : 예산의 목적 및 기본방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② 예산총칙

- 선산복지재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54,840천원으로 한다.
-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51,000천원으로 한다.
- 대구안식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046,618천원으로 한다.
- 한우리보호작업장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824,504천원으로 한다.
- 성부정신수양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65,144천원으로 한다.

- 이사 한 ● : 회의 자료를 통한 설명대로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예산(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2026년에도 금년도와 같이 법인과 산하시설 모두가 계획된 예산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백●흠 : 앞서 설명된 2026년도 선산복지재단 및 산하시설 예산(안)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재청합니다.
- 의장 김●식 : 이사 한●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석 이사 : 이사 한●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선산복지재단 및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 제 6 호 의안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 《 제 7 호 의안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 《 제 8 호 의안 : 2025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 《 제 9 호 의안 : 2025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 《 제 10 호 의안 : 2025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의장 김●식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1회·수익사업회계 제1회,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제1회,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1회,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1. 추경예산의 주요내용

-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254,840천원에서 22,073천원이 감소한 232,767천원으로 변경
-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353,500천원에서 27,232천원이 감소한 326,268천원으로 변경
- 대구안식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3,017,495천원에서 300,366천원이 감소한 2,717,129천원으로 변경
- 한우리보호작업장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586,130천원에서 310,941천원이 감소한 1,275,189천원으로 변경
- 성부정신수양원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 3,257,950천원에서 109,408천원이 감소한 3,148,542천원으로 변경

- 이사 김●길 :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결산 추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다. 이번 추경 역시 그 동안 매년 추진해 온 방향에 따라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 및 산하시설 모두가 연말까지 예산을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기를 당부하며 이에 본 결산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민●훈 : 앞서 제시된 의견에 동의하며, 본 결산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2025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11 호 의안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 심의 》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한우리보호작업장의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전후 비교표

변경전의 운영규정 조문	변경후의 운영규정 조문	비 고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9장 이용장애인 복무규정	
제54조(시간의 근로 및 공휴일) 시설장은 작업물량 납품상 긴급을 요하거나 생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근로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54조(시간의 근로 및 시간의 수당) 시설장은 작업물량 납품상 긴급을 요하거나 생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u>평일 및 공휴일에 시간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u>	*제54조 일부 내용 변경

- 이사 류●원 : 자료를 통한 제안설명과 같이 법인 산하시설인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은 이용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조 ● : 앞서 제안설명과 동의 의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은 이용장애인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변경(안)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향후 운영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이에 본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한우리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마. 폐회

- 의장 김●식 : 기타 토의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 동의 바라다.
- 이사 한 ● : 선산복지재단의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 최●민 : 이사 한●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 참 석 이 사 :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선산복지재단의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의 폐회를 선언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

대표이사	김	●	
이 사	한	●	
	백	●	
	민	●	
	류	●	
	최	●	
	김	●	
	조	●	
감 사	이	●	
	윤	●	